직원 근무시간

근로시간

근무시간이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 함(단, 작업을 위한 지휘.감독아래 대기시간은 포함

구분	주요내용									
법정근로시간	-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									
	- 1일 8시간, 1주 40시간 (휴게시간 제외)									
소정근로시간	-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									
	-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)									
연장근로	-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									
	-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									
	$-$ 1일은 통상 0 $^{\sim}$ 24시,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계속 근로하더라도 전날의									
	근로로 인정									
야간근로	-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									
휴일근로	- 법령,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을 불문하고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									
	-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는 미 합산									
	- 단,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합산									

□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신

- □ 연장야간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
- 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임금지급을 갈음한 휴가 부여 가능 (보상휴가제)

근로시간변경안

2. 근로시간 변경안

구 분		현 행	변 경					
주중 연장근로	토요일	(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별개)	(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)					
주중 연장근로가	휴일	토요일, 일요일 모두 휴일근로로서 각 8시간 근로가능 (휴일근로 수당 1.5배)	토요일, 일요일 근로 시, 연장근로 한도 12시 간 초과로 법 위반					
있었던 경우	휴무일	일요일만 휴일근로 8시간 근로가능 (휴일근로 수당 1.5배)	_ ,					
주중 연장근로가 없었던 경우	휴일	토요일, 일요일 모두 각 8시간은 휴일근로, 이와 별개로 총12시간 연장근로 가능 (휴일 1.5배 + 연장 0.5배 수당지급)	토요일, 일요일 합하여 총 12시간만 근로 가능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(휴일 1.5 + 연장 0.5 수당지급)					
	휴무일	 ①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 가능 (연장수당 1.5배) 또는, ②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근로와 별개로 연장근로 12시간 가능 →휴일근로 8시간 초과 근로 12시간에 대해서만(휴일 1.5+연장 0.5 수당지급) 	①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만 가능 (연장수당 1.5배) 또는, ② 일요일 휴일근로 12시간 가능 (휴일 1.5 + 연장 0.5 수당지급) 또는, ③ 토요일 8시간(연장 1.5)+일요일 4시간 (휴일 1.5 + 연장 0.5 수당지급 가능)					





연차휴가

구분	부여조건	연차일수	가산일수	사용시기	미사용시
연	1년간	15일	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	연차휴가	미사용일수
차 휴가	소정근로		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	청구권	만큼 수당 지급
	일수를 8할		계속근로년수 매2년마다 1일	발생일로부터	
	이상 근무		가산(최대25일 한도)	1년간	

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

- □ 1개월간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
- □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(이하 '연차수당) 지급
- □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개월간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0일 또는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0일 또는 15일에서 뺀다.

2. 연차휴가부여 예시

근무 년수 근무 유형	1 년	2 년	3 년	4 년	5 년	7 년	9 년	11 년	13 년	15 년	17 년	19 년	21 년	23 년	25 년	27 년	29 년	31 년
365일	15	15	16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5	25	25	25	25
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
275일	10	10	11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<mark>25</mark>
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	일

- ▶ 연차유급휴가 = (근속연수-1)/2 + 15일(or10일), 총 휴가일수 한도 25일
-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(10개)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함
- 이 경우 가간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